

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전문개정 2010. 2. 4.]

제67조(과태료) ①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(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·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1. 8. 4.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1. 8. 4., 2020. 4. 7., 2022. 1. 18.>

1. 제14조제2항(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
2.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

3. 삭제 <2011. 8. 4.>

4. 삭제 <2015. 6. 22.>

5. 삭제 <2015. 6. 22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부과·징수한다. <신설 2010. 2. 4., 2013. 3. 23.>

제68조 삭제 <2010. 2. 4.>

부칙 <제20760호, 2025. 1. 31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존치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따라 존치하게 되는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제44조(제52조의2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1.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
2. 이 법 시행 전에 제52조의2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된 재정비시행계획
3.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에 따라 고시된 물류단지계획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계획이 이 법 시행 이후 변경승인되어 고시되거나 수립이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(제2호에 따른 재정비시행계획의 경우에는 변경승인된 경우를 말한다) 그 변경된 계획